

함께 꽃피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2017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MPO 마포구 옴부즈만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간사

‘갈등과 반목에서 신뢰와 화합으로’

청렴과 협치의 구정 방향에 발맞춰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이 3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는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에 옴부즈만의 마음가짐과 업무방향에 더욱 신중한 책임감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이 작성한 운영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6건, 2016년 18건, 2017년 24건의 청렴계약감시평가를 실시하였고, 2015년 30건, 2016년 66건, 2017년 6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항목이 청렴감시평가 대상으로, 사업규모가 큰 건축공사가 전체 평가 대상의 5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역시 주택건축, 도시환경, 교통건설 등이 70%~75%로 경제성장에 따른 이익 배분과 개발에 의한 도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원화의 중심에 선 시민 사회에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통의 창구이며 조절자인 지자체는 공정하고 선진화된 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행정 주무관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역량 증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기회로 삼는다면 변화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이상향에 눈높이를 함께 하여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협치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이러한 시대 요구에 부응하여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업무성격상 외부 민원뿐만 아니라 부서간의 갈등 요소나 업무 공백을 발견하면 조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부족했던 옴부즈만의 대내외적 홍보와 업무확대를 위한 간담회, 부서 면담,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읍부즈만으로 언제나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법 또한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부지런히 발로 뛰고 지혜를 모아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청렴 구현과 구민의 갈등, 반목을 해소하는 중재자로서 소통과 신뢰를 근간으로 화합을 이루는 한 해를 열어가겠습니다.

마포구 읍부즈만

김순도

김철기

이수복



+ 목 차

I. 옴부즈만 운영 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0
2. 구성 현황	12
3. 직무 및 권한	13
4. 정례회의	15
5. 업무 처리 절차	16

II. 옴부즈만 운영 성과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20
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22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28
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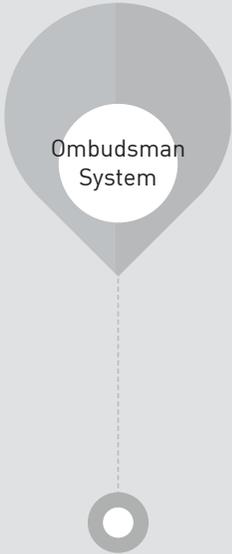
III. 옴부즈만 운영 사례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1-1. ○○동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민원	34
1-2. ○○동 ○○-37 건축물대장 복원요청	36
1-3. ○○동 ○○○-29 재산세과세대장 정정요청	42
1-4. ○○동 위반건축물 철거요청	45
1-5. ○○경로당 이전 요청민원	47
1-6. ○○동 ○○○-11,12 신축공사 피해민원	50
1-7. ○○동 축대붕괴 피해민원	53
1-8. 장애인 안마바우처 피해민원	54
1-9. 주택가의 지게차 무단주차 금지 요청민원	55

2. 부서자문 주요 사례	
2-1. 도화동 주민센터 2층 증축(문고) 검토	59
2-2. LIG아트홀 공연장 시설개선 방안 검토	61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3-1.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 리모델링 공사	64
3-2.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67
3-3. 2017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69
3-4. 2017년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70
3-5. 홍대 걷고싶은거리 도로 정비 공사	71
3-6. 2017년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용역	72
3-7. 2017년 IT역량강화 구민 눈높이 정보화교육 운영 용역	73
3-8. 2017년 사이버 평생학습관-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용역	74
3-9.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75
3-10. 망원1배수문 외 13개소 정밀점검 용역	76
3-11. 방법용 CCTV 관제 용역	77
3-12. 2017년 마포구 방법(다목적) CCTV 구매 설치	78
3-13. 마포중앙도서관 내 만화창작실, 애니메이션실 물품 구매	79
4. 기타 구정 활동 사례	80

IV. 참고 자료

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84
2. 정례회의 주요 추진일지	90
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6
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02



Ombudsman
System

I. 옴부즈만 운영 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구성 현황
 3. 직무 및 권한
 4. 정례회의
 5. 업무 처리 절차
-

I. 옴부즈만 운영개요

0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가. 도입배경

-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채택된 이래 주로 북유럽에서 발전해 온 제도로,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이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제도이다. 그 후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지금은 영국·이스라엘·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 시대가 발전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였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도 다양해졌으나,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만 및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 이에 마포구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나.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다. 추진경과

-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4. 4. 24.)
-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2014. 10. 16.)

- 옴부즈만 공개모집(2014. 11. 3 ~ 11. 7.)
- 옴부즈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2014. 11. 14.)
- 옴부즈만 사무실 설치(2014. 12. 16.)
- 제192회 마포구의회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결(2014. 12. 19.)
- 제1기 마포구 옴부즈만 3인 위촉(2015. 1. 1.)
- 제1차 옴부즈만 정례회의 개최(2015. 1. 9.)
- 서대문구 옴부즈만과 간담회 개최(2015. 10. 6.)
- 지방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참석(2015. 10. 14.)
- 옴부즈만 협의회 구성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참석(2016. 2. 29.)
- 2015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2016. 3. 7.)
- 2015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보고(2016. 3. 7.)
- 안양시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간담회 참석(2016. 8. 5.)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업무협력 워크숍 참석(2016. 10. 13.)
- 안양시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간담회 참석(2016. 10. 21.)
- 마포구 주관 지방옴부즈만 간담회 개최(2016. 12. 1.)
-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포상 수상(2017. 3. 3.)
- 2016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2017. 3. 6.)
- 2016년 옴부즈만 운영성과 구의회 보고(2017. 3. 10.)
-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콘퍼런스 참석(2017. 5. 17. ~ 2017. 5. 18.)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업무협력 워크숍 참석(2017. 11. 30.)
- 마포구 주관 지방옴부즈만 간담회 개최(2017. 12. 13.)
-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2017. 12. 22.)

02 구성 현황

가. 구성 및 지위

- 지 위 : 구청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
- 임 기 : 2년
- 위촉 방식 : 공개모집 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운영 방식 : 전원합의제
- 구성 현황

성명	주요 경력
이수복 대표 읍부즈만	·서강대학교 법학석사 ·前 마포구 공보과장
김순도 읍부즈만	·前 예상건축사사무소 대표 ·現 디자인그룹예상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철기 읍부즈만	·前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現 법무법인 세강 대표 변호사

나. 자격 요건 (조례 제3조 제3항)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03 직무 및 권한

가. 직무관할 (조례 제5조)

- 마포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 (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나. 주요 직무 (조례 제4조)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다. 주요 권한

1) 고충민원의 조사 (조례 제14조)

-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의 의뢰도 할 수 있다.
-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조례 제16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 (조례 제17조)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조례 제19조)

-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5) 운영상황의 보고 (조례 제20조)

-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6) 청렴계약 감시·평가에 따른 자료제출 (조례 제22조)

-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04 정례회의

- 정례회의 : 주 1회 개최(2017년 47회 개최)
- 기 능
 - 고충민원 조사 여부 및 담당 옴부즈만 지정
 - 고충민원 조사결과 공유, 논의 등 처리방향을 전원합의제로 의결
 - 주요 반복민원 검토, 구정 주요 현안 공유
 - 청렴계약 감시·평가 점검 및 검토
 - 관련 부서 및 민원인 의견 청취, 현장 조사 등



회의사진



현장조사

05 업무 처리 절차

가. 고충민원 접수 및 조사 (조례 제12조 ~ 제19조)

1) 고충민원 신청

-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방문, 인터넷 게시판, 우편 등의 방법으로 ombudsman에게 신청한다.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사여부 결정

- 정례회의 시에 직접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담당 ombudsman을 지정하고 민원인 및 관련 부서에 조사 실시를 통보한다. (단순민원은 관련 부서로 이첩한다.)

3) 민원조사 실시

-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4) 조사결과 통보

- 조사가 완료되면 정례회의 시에 전원합의제로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관련 부서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을 통보한다.
- ombudsman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ombudsman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고충민원의 반려 등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ombudsman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ombudsman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조례 제21조 ~ 제23조)

1) 운영계획 수립

-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 옴부즈만은 제출 목록을 바탕으로 매년 활동범위를 정하여 청렴계약 감시·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감시·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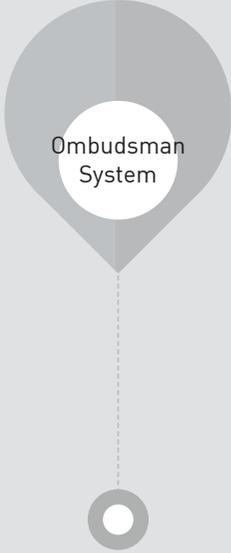
-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3) 감시·평가 결과 통보

- 평가가 완료되면 정례회의 시에 전원합의제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관련 부서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을 통보한다.
- 옴부즈만의 조치의견을 통보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옴부즈만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감시·평가 주요 검토 사항

- 사업추진의 타당성,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요건의 적정성
-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 여부
- 설계의 적합성(도면 부실 여부 등), 설계변경 여부 및 필요성
- 추진의 적정성(이유 없는 공사 지연 여부 등)
- 시공품질 점검 및 설계도면과 시공현장 비교



Ombudsman
System

Ⅱ. 옴부즈만 운영 성과

-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0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실적

가. 총평

- 2017년은 마포구 옴부즈만이 도입된 세번째 해이자 제2기 옴부즈만이 출범한 해로 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시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었다.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고충민원 접수·처리 건수는 2016년도와 비슷하였다(66건에서 62건으로 감소). 민원분야는 교통건설 분야가 가장 많았지만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고충민원은 2016년에 이어 주택건축 분야가 가장 많았다.
- 올해는 특히 고충민원 해결에 있어 민원인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6년도에 비해 처리기간은 다소 연장되었다(12일에서 15일로 연장).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취지와 맞게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고충민원 해소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현장 조사 등을 강화하여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확고히해나갈 것이다.

나.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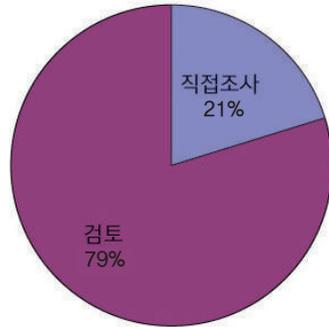
계	민원 구분		조사 여부	
	신청민원	반복민원	직접조사	협의처리
62	60	2	13	49

다. 민원 접수 방법 및 처리기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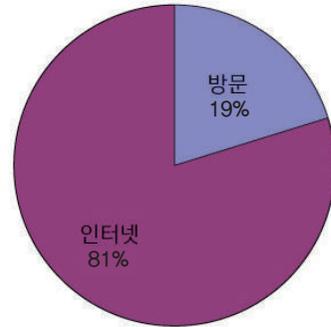
(단위:건,일)

계	접수 방법(건)		처리기간(일)		
	방문	인터넷	평균	최대	최소
62	12	50	15	150	1

민원 접수 처리 현황



민원 접수 방법 현황



라.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건)

계	교통 건설	도시 환경	주택 건축	산업 경제	청소 행정	복지 교육	일반 행정	보건 위생
62	25	8	14	2	4	3	2	4

마. 조사민원 처리 결과 현황

(단위:건)

계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조정	불인용	심의종결	진행중
13	.	1	2	5	1	4	.

바. 민원관련 법률 자문 및 공공시설 관련 기술 자문 현황

(단위:건)

구분	계	복지 교육	일반 행정	주택 건축	도시 환경	기타
법률자문	13	3	6	2	1	1
기술자문	3	.	.	3	.	.
합계	16	3	6	5	1	1

02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내역

가. 민원 처리 내역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1	<p>○○동 ○○아파트 신축 공사 피해 민원</p> <p>재건축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요청</p> <p>(처리기간 : 2. 3. ~ 4. 27.)</p>	<p>- 인근 주민 및 시공사 측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결과, 2가구는 피해보상에 대해 합의하였고, 4가구는 보상 금액 차이가 상당하거나 소송 진행 중으로 종결함.</p>	조정
2	<p>○○동 ○○-37 건축물대장 복원 요청</p> <p>건물 무신고 멸실에 따라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복원 요청</p> <p>(처리기간 : 2. 21. ~ 7. 5.)</p>	<p>- 민원인이 관련 법규에 맞게 개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물대장을 복원하여 줄 것.</p>	의견표명
3	<p>○○동 ○○○-29 재산세 과세대장 정정 요청</p> <p>위 건물은 상가와 주택으로 사용했었는데, 재산세과세대장에 상가로만 기재되어 있으니 변경 요청</p> <p>(처리기간 : 3. 9. ~ 5. 4.)</p>	<p>- 민원인의 요청대로 재산세과세대장 코드를 현황과 같이 주택 및 상가로 변경하여 줄 것.</p>	권고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4	<p>○○동 위반건축물 철거 요청</p> <p>위 건물 4, 5층 및 옥상의 무단 증축 부분 철거 요청</p> <p>(처리기간 : 3. 14. ~ 6. 20.)</p>	<p>- 민원인과 면담하여 민사소송 제기 방법 등을 안내하고 민원 종결함.</p>	심의 종결
5	<p>○○경로당 이전 요청 민원</p> <p>도로 확보 및 경로당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경로당 이전 요청</p> <p>(처리기간 : 4. 20. ~ 9. 13.)</p>	<p>- 부서면담하고 현장 방문하였음. 해당 부서에서 경로당 이전추진을 하였으나, 경로당 회원들의 이전 요구 조건이 수용 불가하여 이전을 보류함.</p>	의견표명
6	<p>○○동 ○-103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 요청</p> <p>작년 옴부즈만의 의견표명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원하지 않아 못하였으니 새로운 임차인과의 영업자지위승계를 허가해 줄 것</p> <p>(처리기간 : 5. 2. ~ 6. 14.)</p>	<p>- 작년에 영업자지위승계를 해줄 것을 의견 표명한 이유는 위반건축물이지만 그동안의 신뢰를 보호하고 이미 영업을 위한 시설, 설비 등이 모두 구비되었기 때문임. 위반건축물을 해제하기 전까지 영업자지위승계는 바람직하지 못함.</p>	불인용
7	<p>○○아파트 잡수입 관련 민원</p> <p>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혼합 주택단지(분양+임대)의 잡수입 배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p> <p>(처리기간 : 5. 11. ~ 6. 7.)</p>	<p>-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협약 체결 후에 잡수입을 배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지만 상대방이 SH공사이므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함.</p>	조정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8	<p>○○동 ○○○-11,12 신축 공사 피해 민원</p> <p>공사로 인해 인근 교회의 지하 벽 파손, 바닥 들뜸이 발생했으므로 보수 요청</p> <p>(처리기간 : 5. 15. ~ 12. 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하여 시공사, 감리자, 민원인과 면담하였고, 시공사 측에 공사피해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고 보수해 줄 것을 요청. -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긴급하게 방수천막을 건물외벽에 설치. - 옴부즈만 정례회에서 2차례 양측 면담을 통해 합의안 작성하였음. 	조정
9	<p>나무 가지치기 요청 등 민원</p> <p>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문의와 마당 나뭇가지치기 요청</p> <p>(처리기간 : 7. 3. ~ 7.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마을변호사'제도를 안내함. 나무는 학교 소유로, 학교 측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가지치기함. 	조정
10	<p>○○동 축대붕괴 피해민원</p> <p>축대붕괴로 인한 실외기 파손 등의 피해보상요구</p> <p>(처리기간 : 7. 3. ~ 8.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및 민원인 면담하였음. 축대보수비용 및 기타 실외기 등 파손비용은 피민원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함 	조정
11	<p>○○동 ○○○-28번지 건물 손상 관련 민원</p> <p>○○동 ○○○-28번지 건물 신축시 발생한 담장벽체 및 바닥 균열 등 피해발생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 또는 시공사측에 적절한 보수 요구</p> <p>(처리기간 : 8. 2. ~ 8. 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결과, 벽체 및 바닥균열은 이미 민원인이 수리를 끝낸 상태였음. 두 건축주와 함께 피해보상관련 조율을 하고자 하였으나 민원인 거절로 종결함. 	심의종결

연번	민원요지	조치의견	조치유형
12	<p>장애인 안마바우처 피해민원</p> <p>안마시술사의 무리한 안마로 인한 건강악화 회복을 요구</p> <p>(처리기간 : 7. 26. ~ 8. 3.)</p>	<p>- 주민센터에서 민원인 댁 내방하여 면담하였고,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민원 종결함.</p>	심의종결
13	<p>주택가의 지게차 무단주차 금지 요청민원</p> <p>주택가에 주차하는 건설기계 차량 이동주차 및 주차금지 요청</p> <p>(처리기간 : 9. 25. ~ 11. 10.)</p>	<p>- 현장방문 및 민원인 면담하였음. 교통행정과를 통해 건설기계차량 차주에게 이동주차 요청(유선, 안내문)하였음. 지게차 사용본거지인 영등포구로 민원 이첩함.</p>	심의종결

나. 기타 민원 검토 현황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1	행복주택 인근 인도 가로수 식재 요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송
2	상암동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토목과
3	합정동 인도 청소 요청	청소행정과
4	신수동 ○○○ 근처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자제 요청	교통행정과
6	합정동 영진시장 정비 요청	일자리경제과
7	연남로 주변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8	와우공원 입구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9	고물상 폐가구 등 적치물 단속 요청	건설관리과
10	서강대 앞 리모델링 공사장 적치물 단속 요청	건설관리과
11	월드컵북로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12	성산동 화분 적치물 단속 요청	건설관리과
13	서강대 정문 입구 사다리차 단속 요청	서울시 이송
14	마포아트센터 흡연구역 설치 요청	마포문화재단 이송
15	○○구역 재개발 공사 소음 자제 요청	환경과
16	연남동 경의선숲길 청소 요청	연남동
17	서강대 정문 앞 방치 오토바이와 손수레 제거 요청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18	마포구청 앞 시위 소음단속 요청	주택과
19	서교초 주변 도로정비 공사 관련 통학길 안전 보호 요청	토목과, 건축과
20	성산동 신축 공사장 적치물 단속 요청	건설관리과
21	현황도로 지정관련 법률 근거 문의	건축과
22	○○택배 소음자제 및 적치물, 불법주차 단속 요청	환경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23	월드컵북로8길 주변 CCTV 설치요청	전산정보과
24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사이의 도로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25	아현역 1번 출구 인도 위 차량 운행 단속 요청	서대문구 이송

연번	민원요지	관련 부서
26	서강로 3길 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27	만리재옛4길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등 폐기물 단속 요청	청소행정과
28	성산초등학교 앞 좌회전 신호 조정 요청	마포경찰서 이송
29	성산로 주변 불법주차단속 요청	교통지도과
30	마포 청소년 문화센터 내 헬스장 리모델링 추진 관련 항의	교육청소년과
31	마포구 공영주차장 내 사고처리 요청	교통지도과
32	주차단속 및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획정 요청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33	음식점 가격표시 위반 조치 요청	위생과
34	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관련 점검실시 요청	위생과
35	상암교차로 교통경찰관 배치 및 속도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마포경찰서 이송
36	건축현장(연남동) 사고 처리 요청	건축과
37	골목 위주 쓰레기배출 현황의 문제점 및 주민대상 공지요청	청소행정과
38	대흥동 재개발 공사 소음 단속 요청	환경과
39	와우산 공원 내 보안등 보수 요청	토목과
40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및 무면허 안마사 단속 요청	도시경관과, 의약과
41	아파트 관리비 부당청구 신고 관련 문의	주택과
42	신축건물 차면시설 설치요청	건축과
43	와우산내 보안등 고장 민원	토목과
44	호텔신축 관련 인근 인도 폭 문의	건축과
45	공사현장 자동차사고 피해 신고	건축과
46	아파트 상가 옥외 설치 실외기 관련 민원	주택과
47	건물 신축 관련 토지 측량 및 건축선 후퇴 문의	건축과
48	토정로 불법주차 단속 민원	교통지도과
49	구청 직원 관련 민원	감사담당관

0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실적

가. 총 평

- 마포구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중 공사 10건, 용역 9건, 물품구매 5건 등 총 24건을 감시·평가하여 1건을 권고하고 8건을 의견 표명하였다.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면담하여 계약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합법성, 예산의 낭비요소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였다.
- 2018년에는 공공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감시·평가를 위해 가급적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현장 조사를 활발히 실시할 것이다.

나.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대상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위:건)

계	구 분		
	공사	용역	물품구매
24	10	9	5

다. 청렴계약 감시·평가 실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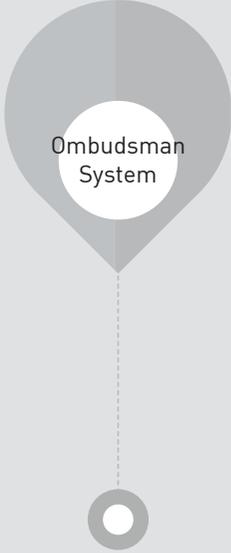
(단위:건)

계	조치유형				
	시정요구	권고	의견표명	특이사항 없음	진행 중
24	.	1	8	15	.

04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내역

연번	사업명	조치의견	조치유형
1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 리모델링 공사	- 진입로 개선 검토 요청	권고
2	(가칭)염리사회종합복지관 신축 공사	- 강당 수용 가능인원이 너무 적음 - 주차 대수를 1대라도 더 확보할 것	의견표명
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책임소재 발생 시 법적인 관점에서 당사자능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주민위원회의 법적성질을 명확히 정립 할 것	의견표명
4	2017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타부서의 요청 건들이 반영되다보니 매년 설계변경이 발생함 -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 필요함	특이사항 없음
5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2017 연간단가)	- 보안등 관리 대장 비치할 것	의견표명
6	홍대 걷고싶은거리 보도 정비공사	-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에 따라 시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7	당인빛물펌프장 증설공사	-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특이사항 없음
8	2017년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 협약서의 협약내용 구체화할 것	의견표명
9	2017년 IT역량강화 구민 눈높이 정보화교육 운영	- 구민 만족도 평가 결과를 철저히 반영할 것	의견표명
10	2017년 사이버 평생학습관 - 초중등 사이버 스쿨 운영 용역	- 교육내용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요청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성화방안 마련할 것	의견표명
11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 구민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함	의견표명

연번	사업명	조치의견	조치유형
12	망원1배수문 외 13개소 정밀점검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 시 제출한 기술자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지 감독 철저히 할 것 - 적격심사평가 심사표에 연필로 기재된 부분 시정할 것 	의견표명
13	방법용 CCTV 관제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특이사항 없음
14	2017년 방법용 CCTV 구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목적을 가진 CCTV의 설치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것 - 하나의 CCTV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의견표명
15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내 만화창작실, 애니메이션실 물품 구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황 확인 	특이사항 없음
16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고정식 CCTV) 신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설치장소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 	특이사항 없음
17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복지시설의 전력효율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Ombudsman
System

Ⅲ. ombudsman 운영 사례

—

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2. 부서자문 주요 사례
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4. 기타 구정 활동 사례

—

Ⅲ. 옴부즈만 운영사례

01 고충·반복민원 처리 주요 사례

○○동 ○○아파트 신축공사 피해 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강○○ 외 6인
- 민원요지 :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등 피해 발생에 대한 보수 또는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

나. 조사내용

이 민원의 그동안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 2. 8. : 현장조사
- 민원인들과 시공사측 부사장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현장을 조사하였음
- 2017. 2. 13. : 민원인들과 면담
- 2017. 2. 15. : 시공사측과 면담
- 시공사인 ○○건설(주) 대표이사, 부사장, 현장소장, ○○기초 E&C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음
- 2017. 2. 28., 3. 2., 3. 15., 4. 4., 등 수차례에 걸쳐 민원인들과 시공사측을 면담하고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음

다. 조사결과

구 분	민원인 요구	시공사 측	비 고
〇〇동 〇〇〇-11	000만원 지급 및 잔여 보수공사	불가	
〇〇동 〇〇〇-13 2층	주택 매입	합의 완료	향후 3년 동안 지반 침하 모니 터링
〇〇동 〇〇〇-13 3층	주택 매입 또는 000만원 요구	합의 완료	향후 3년 동안 지반 침하 모니 터링
〇〇동 〇〇〇-17	000만원 요구	소송 결과에 따르겠으나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 력하겠음	소송 중
〇〇동 〇〇〇-19	000만원 요구	소송 결과에 따르겠음	소송 중
〇〇동 〇〇〇-20	000만원 요구	소송 결과에 따르겠음	소송 중

라. 조치의견 : 조정

〇〇동 〇〇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주변 민원인들 소유의 주택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에 걸쳐 민원인들과 시공사 측의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지만, 6명의 민원인들 중 2명만 합의 하였고 나머지 4명은 상호간에 합의 조정을 거절하거나 현재 소송 중이므로 이 건 민원을 종결 하고자 한다.

○○동 ○○-37 건축물대장 복원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박○○
- 민원요지 : 도로변상금이 부담되어 건물을 수리하던 중 건물이 무너짐에 따라 증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음.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건축물대장을 복원해줄 것
- 무허가건물(증·개축) 주요경위
 - 2016. 9. 20. : 위반건축물 무단증축 전화민원 접수 및 현장방문하여 건축주 아들에게 구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 2016. 9. 21. :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공문 발송
 - 2016. 9. 22.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처리 통보(건축과)
 - 2016. 10. 13. : 위반건축물 일부철거 확인(위반면적 : 120㎡ → 51㎡)
 - ※ 철거 잔여부분 5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철거하기로 약속
 - 2016. 10. 13.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공문 발송
 - 2016. 11. 22.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발송
 - 2016. 12. 20.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보(금액 : 13,846,500원)
 - 2017. 1. 6.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나. 조사내용

- 1) 진행경위
 - 2016. 9. 20. : 위반건축물 무단증축 전화민원 접수
 - 2016. 9. 21. :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공문 발송
 - 2016. 9. 22.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처리 통보
 - 2016. 10. 13. : 위반건축물 일부철거 확인(위반면적 : 120㎡ → 51㎡)
 - 2016. 10. 13.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공문 발송
 - 2016. 11. 22.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발송
 - 2016. 12. 22. :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
 - 2017. 1. 24. :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조사
 - 2017. 2. 17. : 국민권익위원회,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 해소 협조요청

- 2017. 3. 10. : 옴부즈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현장방문 조사
- 2017. 4. 26.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 질의(도시계획과)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비준치 건축물 건축행위 기준(2008. 11. 10.) 방침과 관련하여 재·개축 시 건축물 구조를 조적조로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 진행시 철거가 용이한 경량철골구조(판넬 마감)로도 건축 가능한지 여부
 - 서울시에 수차례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신 없음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음

2) 건축물 개요

○ 말소현황

대지위치	용도	연면적	층수	구조	철거면적
○○동 ○○-37	일반음식점	49.27㎡	지상1층	브릭조,벽돌조	전체철거

○ 위반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용도	위반면적	구조	발생연도
○○동 ○○-37	영업	51㎡	판넬/판넬	2016

○ 현장 사진



3) 관련기관(부서) 의견

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비준치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여 장기 상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도심의 상업기능 등 활성화와 서울의 도시경관을 향상 시키고자 대수선 및 2층 이하의 조적조 개축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받아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의4 적용의 완화를 받은 증축도 허용 하는 점,
- 국유지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66조 제4항, 제6항에도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 수익계약으로 매각금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등
- 상기 사안을 감안하여 추진절차 등을 통해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복구하여 고충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요청.

나) 도시계획과 의견

- 서울시 방침은 1978년부터 시작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장기미시행구역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지정된 신촌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도 적용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건축행위기준에 대해 서울시 방침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음.
- 동 번지는 정비계획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지구가 있을 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조성하도록 협조 요청 예정임 .
-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는 동 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원상복구는 불가하다는 의견임.

4)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 현장 조사, 민원인 면담, 관련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가) 민원인 소유의 ○○동 ○○-37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행위제한 등)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신·증축 등이 금지된 지역이다. 다만, 서울시장 방침 제189호(1999. 3. 13.)에 근거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비준치 건축물 행위 기준(2008. 11. 10.)'에 따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령」 제13조의4(행위허가 대상 등)의 규정과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5 적용의 완화를 받은 신축 및 증축은 허용되고 2층 이하의 조적조의 경우 재·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허용된다.

나) 민원 내용대로 1985. 3. 27.에 사용승인 된 ○○동 ○○-37 소재, 브릭조 연면적 49.4㎡ (1층 42.52㎡, 부속건축물 1동 6.75㎡, 이하 ‘이 건 종전 유허가건물’이라 함) 앞뒤로 국유지를 점용하여 2011. 3. ~ 2016. 3. 까지 130,490,680원의 변상금 및 점용료가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 민원인이 이런 부담 때문에 국유지를 점용한 증축 부분을 철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다) 민원인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도중에 이 건 종전 유허가건물이 붕괴되어 어쩔 수 없이 종전의 브릭조 유허가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연면적 120㎡판넬/판넬조 건물을 무단 건축하였다. 2016. 9. 20.에 이런 사실이 무허가건물 단속 부서인 도시경관과에 접수되었고, 2016. 9. 21.에 도시경관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교부하였으며, 2016. 9. 22.에 도시경관과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인 건축과에 이 건 종전 유허가건물의 건축물대장 말소를 의뢰하였고 건축과에서는 당일(2016. 9. 22.)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하였다.

라) 이후 민원인은 이 건 종전 유허가건물 연면적 49.27㎡에 거의 부합되게 초과면적 69㎡ (120㎡→51㎡)를 철거하였고 2016. 10. 13. 마포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건축물 일부철거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이 건 종전 유허가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 말소되었고 잔존 건물은 종전 건물과는 구조 등이 상이한 무허가건물이므로 민원인에게 2016. 10. 13., 2016. 11. 22.에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과 이에 대한 ‘이행촉구’ 공문을 거듭 발송하였다.

마) 이런 상황에서 신축 판넬/판넬조 건축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세입자는 무허가 건물 영업으로 음식점 신고가 취소당할 우려가 있자 임대인인 민원인에게 이를 항의하였고, 월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결국에는 임대인을 형사 고소하는 사태로 전개되었다.

다. 조사결과

- 1) 이 건과 같은 건물을 건축하려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재·개축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임의로 무허가 판넬/판넬조 건축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민원인은 이에 대하여 마포구청에 문의하였지만 도시환경정비 구역이라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불명확하다. 가령 이런 답변을 마포구청에서 민원인에게 했다 하더라도 사전 무단 건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2) 그러므로 민원인이 사전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 유허가 브럭조 건물을 철거한 뒤 무허가인 판넬/판넬조 건물을 건축한 행위에 대한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은 적법하다. 또한 이미 멸실된 이 건 종전 유허가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말소한 조치도 적법하게 보인다.
- 3)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대수선 또는 재·개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 절차도 없이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단 하루 만에 건축물 대장을 말소한 조치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 4) 고령인 민원인은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없기에 시공업자의 말만 믿고 이런 건축 행위를 하였다. 또한 세입자는 계속 월차임을 내지 않고 있으며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상당한 괴로움을 받고 있다. 아울러 도시환경정비 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조적조의 경우, 재·개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민원인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5) 말소된 이 건 종전 유허가건물의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재·개축 처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말소를 의뢰한 도시경관과의 복원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종전 유허가건물은 멸실된 상태이므로 복원 요청도 어려운 상황이다.
- 6) 도시환경정비구역을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건축법」, 위 서울시장 방침 등에 부합하게 재축 또는 개축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복원해 준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건 종전 유허가건물의 경우, 사전 적법절차만 제대로 거쳤다면 2층 이하의 조적조 재축 또는 개축은 가능했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7) 도시계획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여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알맞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받기 바란다.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적법한 재·개축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건축과에서는 종전 건축물대장을 복원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를 재축 또는 개축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고충이 구제되기를 바란다.

라. 조치의견 : 의견표명

도시계획과는 「도시 및 환경 정비법규 및 건축법규」등 관련 법규와 서울시장 방침 제189호 (1999.3.13.)에 근거하여 운용중인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비준치 건축물 행위 기준 (2008.11.10)’ 방침에 따라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소 차원에서 구제해주길 바란다. 이후 민원인이 관련 법규에 맞게 개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는 멸실되었던 이건 종전 유허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복원해줄 것을 의견 표명한다.

○○동 ○○○-29 재산세 과세대장 정정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김○○
- 민원요지 : ○○동 ○○○-29 재산세 과세내역을 2005년 전과 같이 “주택”으로 정정해 줄 것.
또한 과세대장에 “지상, 지하”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상만 존재하니 정정 요청.

나. 조사내용

1) 세무과 의견

- 가) 민원인이 해당 건축물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세입자가 거주했다는 전입세대열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상가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인지를 소명하는 데는 부족함. 또한 전입신고 당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없었고 이 건물은 인쇄소로 사용되어 왔음.
- 나) 1976. 8. 30. 민원인이 건축물을 용도 변경(주택->상가)하였고 그 후에 상가로 부과해야했으나,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주택으로 계속 부과하다가 2005년도에 정정한 것으로 파악됨.
- 다) 과세대장에 지상에서 “지상, 지하”로 바뀐 것은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지상으로 변경해줄 것을 검토 중임.

2) 현장 방문

- 가) 방문 당시 석면만 제거한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고, 줄자로 대략적인 현황을 측정하였음.
- 나)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해당 건물의 주택·상가 사용 부분을 계산한 결과, 50%이상 사용한 부분이 상가가 많아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 또한 각종 공부, 현황측량 도면 등의 자료와 함께 주변 여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에는 지하라고 볼만한 구조는 없었음.

다. 조사결과

- 1) 각종 공부(舊건축물관리대장, 일반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舊재산세과세대장 등), 현황측량 도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의 자료를 모두 검토하였다. 또한 읍부즈만과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행한 현장 면적 실측조사와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에는 지하라고 볼만한 구조는 없었고 면적 또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민원인의 요구는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포구에서 직권 변경한 2006년도 당시로 소급하여 변경전인 2005년도의 재산세 과세대장 면적인 '지상주택 34.64㎡, 지상상가 38.21㎡' 상태로 바로잡아 재산세 과세대장 코드번호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런데 이 건 민원과 같이 한 건물의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업용으로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적용에 있어 이론(異論)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2항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나) 참고사항[제33판 지방세실무(김의호 著)]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당해 건물 연면적의 50%를 초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미만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다) 위의 규정을 보면 법문언상 '1동(棟)'과 '1구(構)'의 표현이 불명확하여 혼동을 주고 있다. 어느 법률해석에 따르면, 제1호의 '1동(棟)'의 적용은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이고, 제2호의 '1구(構)'의 적용은 단독주택에 적용해야 한다. 이 건은 단독 건물이므로 제2호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주거용도 사용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 부과청의 과세업무 집행에 따른 '신의·성실의무'를 고려하는 한편 행정부 '행심제2007-85호(2007. 2. 26.)' 결정사례 취지 등을 종합해보면,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50/100 이상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의 50/100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

호를 적용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주거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다시 말하면 위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상호배 타적, 독립적인 규정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규정으로 해석해야 온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이 앞에서 언급한 ‘실질과세’라는 대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치의견 : 권고

○○동 ○○○-29 건물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2006년 변경 전 상태로 환원하여 지상주택 34.64㎡, 지상상가 38.21㎡로 코드번호를 경정할 것을 권고한다.

○○동 위반건축물 철거요청 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박○○
- 민원요지 : 민원인은 ○○동 ○○○-10번지 위반건축물로 인해 일조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위반건축물의 시공자는 각서를 작성하여 대출 문제가 해결되면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 이 위반건축물을 철거해 줄 것

나. 조사내용

1) 그 동안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6. 8. 18. : 위반건축물 무단증축 전화민원 접수 및 현장 방문하여 시공자에게 구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 2016. 8. 19. : 시공자 사무실로 강력하게 철거요구 및 철거확약서 작성
- 2016. 8. 29. :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공문 발송
- 2016. 9. 19. : 시공자 사무실로 강력하게 철거요구
 - 보수공사 및 대출문제를 사유로 철거를 계속 미룸
- 2016. 10. 4. : 시공자 및 건축주 형사고발
 - 약식 기소 및 과태료 부과 : 150만원
- 2016. 11. 16. : 행정대집행 시행(1차)
- 2016. 11. 29. : 행정대집행 시행(2차)
 - 격렬한 저항으로 대집행 중단 및 철거약속(음성녹음)
- 2016. 12. 1.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공문 발송
- 2016. 12. 5. : 시공자 및 건축주 형사고발
 - 약식 기소 및 과태료 부과 : 300만원
- 2017. 1. 9.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발송
- 2017. 2. 7.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보
- 2017. 3. 2.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통지(2,260,560원)

2) 도시경관과 의견

위반건축물을 증축하지 못하게 민원 접수 때부터 강력하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건축주 측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음.

3) 현장 사진



옥상에서 본 증축 사진



민원인 집에서 바라본 정면

다. 조사결과

관련 부서인 도시경관과의 의견은 현재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구청의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그동안 위와 같이 건축법 위반으로 2회에 걸친 형사고발, 철거 시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2회에 걸친 건축법 위반 형사고발 건에서 시공자만 처벌되었고 실제로 위반건축물의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는 형사 처벌되지 않았다. 건축주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라. 조치결과 : 심의종결

이 민원의 요지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닌 무단증축 부분 철거이다. 향후 처리방법은 민원인이 원고가 되어 위반건축물 건축주를 피고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위반건축물 철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하므로 심의 종결한다.

○○동 경로당 이전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김○○ 외 290명
- 민원요지: ○○경로당 시설 개선 또는 이전 요청
 - 지구단위 해제 후 인근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경로당이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이 건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차량소통이 어려움.
- 경로당 현황

위치	용도	회원수	건축물 (무허가:1960년도 건립)			대지		
			면적	구조	소유주	면적	소유주	지목
○○동 3 ○○	박○○	24	72.72㎡	벽돌조	○○동 제1경로당	294㎡	서울시	도로

나. 조사내용

- 1) 진행경위
 - 2017. 4. 6. : 소규모 취약시설(○○경로당) 안전점검 신청
 - 2017. 4. 18. : 한국시설 안전공단 안전점검 결과 통보(보통)
 - 2017. 4. 20. : 지역주민 김○○ 외 290명 연명부 제출
 - 2017. 5. 17. : ○○동 경로당 임시총회 개최 및 민원내용 등 설명
 - 2017. 5. 23. : 민원처리 결과 통보
 - 경로당 임시 총회결과 이용자들의 의견에 따라 현 시설 계속 이용

2) 경로당 신축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가) 건설관리과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과와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

나) 도시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 상 저촉사항 없으므로 별도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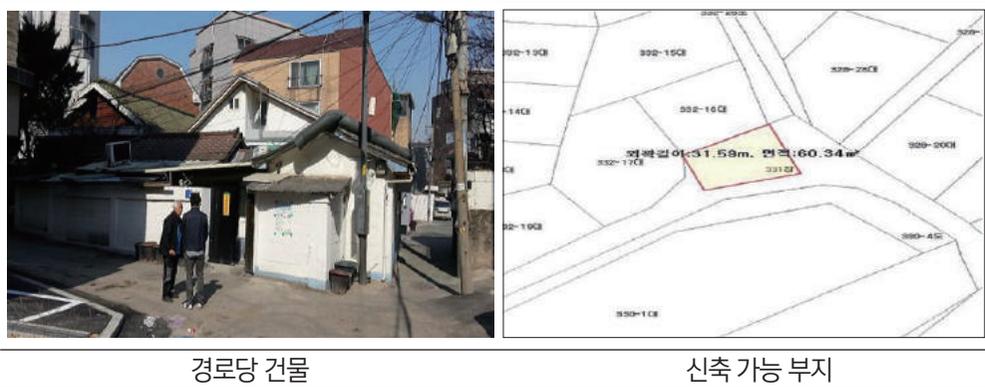
다) 건축과

○○동 ○○○-16번지의 일조권을 고려하면 두 건물 사이에 1.5m의 간격이 있어야 하여 현 면적에 비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듦.

라) 토목과

도로의 선형 유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가각부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 부지의 건축 계획 수정 및 용도폐지 경계 수정 필요.

3) 관련사진



다. 조사결과

민원 내용과 아울러 현장을 파악해보니, 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도로부분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자체 건물도 낡아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현재 장소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활용할 수는 없다. 부득이 인접지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통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현재 ○○동 제1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자체 임시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나친 이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는 먼저 어르신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전 조건의 문제점과 경로당이 놓인 주변 여건을 다시 한 번 잘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2018년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 경로당 이전 추진을 검토해볼 것을 권고한다.

라. 조치결과 : 의견표명

현재 ○○동 제 1경로당이 마을 진입 골목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낮은 경로당 건물이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지나친 이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잘 설득 및 협의하여, 인근 건물 매수 등의 방법으로 경로당 이전이 가능해지길 바란다. 아울러 민원인의 고충 해소와 어르신들의 편익을 함께 도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것을 권고한다.

○○동 ○○○-11,12 신축 공사 피해 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김○○ 외 30명
- 민원요지 : ○○동 ○○○-11,12 신축 공사로 인한 ○○○교회 건물 피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 피해내용
 - 2015. 12. : 철거공사로 건물 벽체 파손 및 배관 동파
 - 2016. 12. : 토목공사로 창호 및 벽체에 오염 및 균열 발생
 - 2017. 2. : 토목 터파기공사로 청년회실 바닥 들뜸 현상 발생
 - 2017. 7. : 토목공사 진동으로 균열발생 및 그로 인한 누수피해 발생

나. 조사내용

1) 진행상황

- 2017. 5. 15. : 옴부즈만 민원접수(홈페이지 접수)
- 2017. 5. 31. : 옴부즈만 민원현장방문
- 2017. 7. : 7.17.까지 건축 관계자와 민원인 간 합의를 하고 결과 통보할 것을 요청
- 2017. 7. 20. : 공사 추가피해 접수
- 2017. 8. 9. : 옴부즈만 민원현장 방문, 추가피해 부분 확인 및 현장소장에게 건물외벽에 방수천막 설치 요구
- 2017. 8. : 시공사 측에서 해당건물 외벽에 방수천막 설치
- 2017. 9. : 시공사 측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신고사항 관련 조치계획서 발송
- 2017. 10. 25. : 교회 측과 시공사 측이 회의에 참석하여 상호간 협의 진행
- 2017. 11. 20. : 교회 측과 시공사 측이 회의에 참석하여 합의서(안) 작성 후 양측에 합의서(안) 통보
- 2017. 12. 27. : 합의안 수정 및 교회 측 서명·날인 완료
- 2018. 1. 15. : 시공사 측 서명·날인하여 합의완료

2) 건축 개요

- 대지위치 : ○○동 ○○○-11,12
- 건축주 : 정○○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6층, 연면적 1,916.05㎡
- 공사종별/용도 : 신축/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 진행현황
 - 2016. 5. 26. : 건축허가
 - 2016. 11. 18. : 착공처리
 - 2017. 5. : 지하 골조공사 중

3) 피해사진



철거공사로 건물 벽체파손과 배관동파



현재 구멍난 부분만 임시 시멘트벽돌 설치



토목공사로 창호와 벽체에 오염과 균열, 기둥주의 균열이 발생



토목 터파기 공사로 청년회실 바닥 들뜸 발생

다. 조치의견 : 조정

위와 같은 경위대로 현장 확인, 양자 간의 면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작성하였다. 이후 시공사 측과 교회 측에 합의를 통보하였으며, 양측 모두 내용대로 서명·날인하여 고충민원 조정을 완료하였다.

○○동 축대붕괴 피해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민○○
- 민원요지 : ○○동 ○○○-84 축대 붕괴로 인한 피해 보상
○○동 ○○○-85 위 옹벽에 대한 안전점검 및 고사목 제거 요청

나. 조사결과

1) 진행 경위

- 2017. 7. 3. : 당직실 민원 접수
 - 옹벽의 토사가 유출되어 아래 건축물(○○동 ○○○-85) 피해 발생
- 2017. 7. 3. : 총무과, 건축과 현장 방문
- 2017. 7. 6. : 옴부즈만, 건축과, 토목과 현장 방문
- 2017. 7. 11. : 고사목 제거
- 2017. 7. 28. : 비용부담 문제 및 옹벽 안전점검에 대한 민원 재접수
- 2017. 8. 17. : 민원인 민○○ 면담
 - 축대붕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요구
- 2017. 8. 30. : 민원인 민○○ 및 상대방 대표 신○○ 면담
 - 피해보상 범위 조정 및 합의

2) 현장방문

현장방문 하여 토목과에서 패인 도로를 정비하였고 고사목도 제거하였다.

다. 조치결과 : 조정

피해보상 범위에 대하여 양측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당사자 면담을 통해 축대 재축조 비용은 축대소유권자인 ○○○-84번지(대표 신○○)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조정하였다. 또한 축대붕괴로 발생한 실외기, 물받이, 창문 파손은 ○○○-84번지(대표 신○○)에서 보상하기로 하고, 민원인 민○○은 세입자 이주비 등 추가 발생 손실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장애인 안마바우처 피해민원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최○○
- 민원요지 :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안마시술과정에서 중의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민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안마사의 무리한 시술로 인하여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음. 민원인은 금액적인 보상을 떠나 악화된 건강회복을 요구함.

나. 조사결과

- 1) 관련 부서 의견
 - 의약과 : 안마사는 신고업이며,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주의조치는 가능.
 - 어르신복지장애인과 : 바우처 부정결제 여부 검토 후, 적발 시 환수조치 예정.
- 2) 과도한 안마시술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당 안마원에 주의 조치할 필요가 있음.
- 3) 복지부서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 마을번호사 연계 등 다른 구제방안 검토가 필요함.

다. 조치의견 : 심의종결

민원인과 면담을 통해 민원내용을 파악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인 댁 내방하여 면담 및 지원가능 서비스 안내하기로 하고 심의 종결함.

라. 부서 조치결과

- 1) 어르신복지장애인과 : 바우처 부정사용 부분 환수조치.
- 2) 의약과 : 해당 안마원에 무리한 시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으로 주의 조치.
- 3) 동주민센터
 - 민원인 댁 2차례 방문하며 민원인 면담 및 지원가능 서비스 안내.
 -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영수증 지참 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드릴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특별생계비(약25만원) 지원도 있다고 안내함.

주택가의 지게차 무단주차 금지 요청

가. 민원개요

- 민원인 : 박○○외 27명
- 민원요지 : 주택가에 건설기계차량(지게차)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이 소음 및 공해피해를 받고 있으니, 해당 차량 주차금지 및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요청
- 민원위치 : 000로 5길 00, 00-1



- 민원진행상황
 - 2017. 9. 25. : 옴부즈만 민원 접수(28인 연서)
 - 2017. 10. 12. : 옴부즈만 정례회에서 조사여부 결정
 - 2017. 10. 16. :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관 현장확인(영등포구 등록차량 확인)
 - 2017. 10. 17. :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관 면담
 - 2017. 11. 1. : 민원현장 방문하여 민원인 면담

나. 조사내용

1) 민원 신청 경위

- 주거지역에 건설기계차량(지게차)이 주차되어 인근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약 2년 동안 해당 건물 소유주인 LH공사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없음.
-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전주차가 가능한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당주차장은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며 건설기계차량 주차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공식이 없어 대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 위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건설기계차량의 이전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해결방안이 없어 옴부즈만에 민원해결을 요청함.

2) 관련 부서(기관) 의견

○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 특정구간에 한하여 건설기계차량 주차 가능
- 현재 해당구간에 공석은 없으며, 정기신청기간에(2018.2월 예정)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 접수 순(마포구 거주기간, 배기량, 장애등급 등)으로 배정되므로 주차구역 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교통행정과

- 해당 건설기계차량 조회 결과, 영등포구 등록차량으로 행정처분은 관할구청에서 이루어져야 함.

○ 환경과

- 차량관련 소음은 환경과와 관계없음.

다. 조사결과

1) 관련 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현장 조사

○ 2개동의 다세대 주택 사이 비좁은 곳에 지게차를 주차하였다. 주차 위치가 담장 및 가스관에 바로 인접되어 있어 지게차 주차로 인해 담장이나 가스관을 훼손 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지게차의 속성상 운행 시 덜컹거림과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인접지민원인들은 이른 새벽 지게차 운행으로 인하여 매우 시끄럽고 연료 냄새가 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 위와 같이 지게차의 주택가 주차로 인하여, 인접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해당 차량은 공영 주차장 등 적절한 장소로 조속히 이동 주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담당부서는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지게차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이동 주차하도록 적극 안내하기 바란다. 이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지게차를 주차하는 장소 주변에 이전 촉구 계도 안내문을 게첨하고, 지게차 사용본거지인 영등포구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처리해야 온당 할 것으로 보인다.

4. 조치의견 : 심의종결

민원 내용대로 지게차의 주택가 무단 주차로 인해, 인접지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주택 가스관 등의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게차를 빠른 시일 내에 이동 주차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된다. 소관 부서에서는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 주차할 것을 설득해보아야 한다. 이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이전 촉구 계도 안내문을 현장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본거지인 영등포구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한다.

5. 부서 조치 결과

교통행정과에서 해당 차주에게 시정 요구하였고 이전 촉구 계도 안내문을 현장에 부착하였으나 지게차를 빼지 않아, 사용본거지인 영등포구에 해당 민원 사항을 이첩하여 해결하였음.

02 부서자문 주요 사례

도화동 주민센터 2층 증축(문고) 검토

가. 현황

- 현재 3층의 문고가 3층 복도에 설치되어 문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임
- 문고의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2층의 녹색 공용공간을 활용, 일부 증축하여 문고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

나. 검토의견

- 1) 사회 환경으로써 건축물은 도시 기능을 수반하며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내적 문화를 수용하고 창출하는 공공적 목적을 함께한다. 특히 공공 건축물의 역할은 문화적 영향력이 더욱 크기에 다변화 하는 시대의 요구와 문화적 콘텐츠를 담아내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 2) 따라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고를 증축, 재배치하여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다만 본 건축물은 마포의 도시디자인을 이끌어가는 공공건축물로서 높게 평가된 디자인의 본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때문에 시대의 요청으로 부가된 기능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의미와 새로운 디자인적 가치를 부가하는 행위에는 절제와 개방의 디자인 문맥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공간적으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부 조경 공간에 내적 활용성을 부여함으로써 외부와 내부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창의적 공간이 재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개선방향 전제 제안
 - 가) 건축물의 형태와 비례적 분석에 따른 디자인 전제와 방향
 - 단면적 입면적 분석: 본 건축물의 형태는 하나의 직사각형을 사선으로 두개의 비정형 박스로 분할(separate)하였다. 이는 건물의 체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외피에 해당하는 디자인요소로 연결되며 중간의 벌어진(release) 공간을 열린 녹색 공간과 공연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계획하였다. 따라서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문화 충전과 휴식을 주고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수직적으로 투영하여 공공적 기능을 강조하고자하는 건축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따라서 증축은 완충과 개방적 기능 수용과 균제의 포괄적 디자인 기법을 필요로 한다.

나) 건축물의 평면적 기능과 공간 분석에 따른 디자인 전제와 방향

- 평면적 분석: 공공성을 높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2층 열린(녹색)공간은 1층 외부로부터 2곳의 외부 계단과 램프로 이어진다. 2층 외부 열린 공간은 외부 직통계단을 통해 3층 전시 홀로 곧바로 연결된다. 2층과 3층 사이 2층의 외부천장 역할을 하는 경사진 투명유리창으로 건물 내외부의 실루엣 조망을 가능케 하는 디자인이다. 아쉬운 점은 여유롭지 못한 공공청사 대지의 특성상 수직이동 기능을 수반케 하는 외부계단의 경사도가 가파르고 공연장을 가로질러 오르내리고자 했던 램프 또한 좁아 실제 휠체어가 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정면에서 연결되는 외부 계단은 더욱 가파른 경사도로 인해 안전상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2층 열린 공간으로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를 주 접근로로 활용하여 서고를 증축하는 계획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서고의 증축으로 인해 열린 공간으로서의 편익과 사용 빈도는 높아지고 장소성은 공고해질 것이다. 외부로부터 진입이 어려웠던 유아나 장애인들에게도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지된 장소성의 매개적 역할로 공공성은 더 확대 될 것이다. 따라서 서고의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에 따른 전제는 기존의 디자인 특성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사진 2층 유리천장면의 투명한 시각적 연속성을 훼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증축 벽면은 3층의 외곽 벽면에서 1.5m 이상 후퇴(setback)하거나 두 개의 2층 외부 기둥에 면하여 구획하여야 하고 벽체도 투명 또는 반투명 유리 등의 재료로 개방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제안한다. 부가적으로 외부의 pond의 사용에는 낙상사고, 누수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조치가 필요하며 공연계단의 조명개선, 기능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층 민원실의 조명도 루버천장의 특성상 빛의 확산이 제한되어 조도가 균일하지 못하므로 광폭의 LED 조명기구로 교체할 것을 제안한다.

LIG아트홀 공연장 시설개선 방안 검토

가. 시설현황

위치	규모	구조	주요시설	비고
마포구 양화로 29, 지하2층	842.68m ² (전용면적)	철골철근 콘크리트	공연장(객석 190석) 연습·분장실, 사무실 등	건축연도 (2012.6.22.)

-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외부와 차단되지 않음
(공연시 소음·진동으로 동일 건물 내 타시설 정상운영 곤란 민원)
- 객석 외 음향 및 조명 등 공연을 위한 시설·장비 전혀 없음

나. 검토결과

1) 공연장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사항

가) 공연장 소음·진동의 문제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하자인지 여부

- 철골 구조의 건물은 진동이 잘 전달되나 유연성이 높고 안정적 구조로 건축법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음 및 진동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과 비용

- 공연장의 천장과 벽면에 방음시설을 충분히 보강하면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으나, 공연시 소음·진동이 지상 3층까지 느껴진다는 입주자의 답변과 진동 전달이 잘되는 철골 구조라는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소음·진동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방음시설 설치비용은 별도의 설계용역을 통해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필요하다.

다) 설계용역

- 음향, 방음, 방진 전문 설계시공 업체의 음향, 진동 측정값을 데이터로 문제 해결을 위한 엔지니어링적 컨설팅 및 공사 제안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구조 현황

- 본 건물의 기본구조는 철골조로서 B2층 공연장 상부 슬라브는 철골 기둥과 철골 보, 철근 일체형 철제 데크플레이트 위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되었다. 천장 슬라브 하단 철제 데크플레이트 및 철골 보 하부에 방화, 단열, 흡음성능의 뽀뽀재로 마감되어있다(건축 기본 사항 임). 별도의 천장재 마감은 되어있지 않고 인테리어 개념으로 오픈된 철제 메쉬틀로 마감

되어있다.

- 천장에 방음 방진을 위한 별도의 마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천장 부분이 진동, 소음에 가장 큰 영향을 전달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 철골구조의 특성상 철골 보는 자연스럽게 진동을 전달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시청각 시설 정도가 아닌 공연장 등의 특수한 기능으로 사용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방음, 방진 보완 시공이 필요하다.
- 벽체는 기둥 부분과 옹벽 부분, 가설 내부 벽으로 이루어졌다. 기둥은 철골빔 위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고, 옹벽부분은 콘크리트 구조이다. 가설벽은 공연장과 계단실 등을 구획하는 내부 벽으로 경량 흡음, 단열, 방화, 방음용으로 구조적 요소와 음향 조절, 흡음, 조명을 위한 인테리어 벽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체적으로 관람석의 마감 수준은 세미 공연 및 시청각 홀의 디자인 요소를 감안한 벽체이나 공연부의 장치는 가변적이므로 정격 공연 시설로는 미흡하다. 흡음, 방음, 방진을 위한 다소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벽체상부의 천장부와 맞닿는 부분은 취약부로 천장부와 같이 특별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이다. 관람석은 계단식으로 콘크리트로 일체화 되어있다. 콘크리트 바닥 위 목재널로 마감 되어있어 일반적인 공연장의 구조이다. 방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진 패드, 방진 카펫 등으로 보강 할 수 있다.

마) 공연시설 전반 현황

-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연 등 시청각 시설로서의 평, 단면적 레이아웃과 내부 시설 현황은 잘 짜여진 구조이다. 코어와 내부시설과의 연결성도 양호하다. 씬크의 도입으로 피난, 휴식, 채광, 환기 등의 극대화를 추구한 점은 시설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디자인 측면의 인테리어 수준도 양호하다.

- 다만 공연 시설로서의 방음, 방진, 조명, 음향 등의 필수 시설은 사용의 수준별 시설 보완이 따라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설개선 및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마포문화재단 협조)

계	시설개선공사			연간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
	계	시설공사 (설계, 방음시설, 소방, 전기, 통신공사)	장비·물품 등 (음향, 영상, 조명, 피아노, 무대)	
3,838백만원	3,294백만원	2,661백만원	633백만원	544백만원

※공사비는 마포문화재단이 마포아트센터 소공연장에 소음·진동이 차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추정

03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사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 리모델링 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9. ~ 2018. 3.
- 사업목적 : 장애인 복지욕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협소한 現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舊 청사 내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여 확장 이전하고자 함.
- 사업비 : 3,984백만원
- 건물규모 : 지상4층, 연면적 2,111.88㎡
- 기존 복지관 건물 연면적 대비 702.35㎡ 증가

층별	연면적(㎡)	전경사진	비고
계	2,111.88(639평)		- 1층: 중앙도서관 현장사무실 사용 중 - 옥탑: 면적 미포함
1층	527.97 (160평)		
2층	527.97 (160평)		
3층	527.97 (160평)		
4층	527.97 (160평)		
옥탑	44.4 (13평)		

- 위치 : 마포구 성산로 128 舊 청사 내 보건소
- 발주방식: 경쟁입찰
- 비고 : 성산1동 주민센터, 구의회 외관공사와 통합 발주

나. 평가결과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현장 소장 및 담당 공무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1) 현장 사정으로 처음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부 변경된 경우, 준공시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추후 건물관리에 활용하기 바란다.

가) 전기·설비 등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현장 상황이 처음 설계도서와 달라 부득이 변경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도면을 정리하여 최종 준공검사 설계도서에 반영하기 바란다.

나) 이는 준공 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전기·설비 등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후임자들이 설치 위치 등을 잘 알지 못하여 힘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2) 건축·전기·설비 시공사 간 협조 체제 유지를 통해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바란다.

건축·전기·설비 등은 분야도 다르고 시공사도 달라 공사 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천장부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등의 높낮이가 달라 나중에 건축파트에서 마감 공사를 할 때 재시공을 해야 하거나, 전기·설비가 미처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건축파트에서 마감을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사 진행 중에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시공을 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3) 전기용량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현재는 적정 전기량일 수 있지만, 준공 후 각종 설비와 장비 등이 추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기용량이 부족해 또다시 승압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전

4) 와이파이 설치를 검토해보기 바란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누락된 와이파이 설치를 검토하여 복지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나중에 시공하려면 더 어렵고 설치 후 마무리 공사 등으로 더 많은 돈이 사용 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 진입로 개선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도서관 쪽에서 복지관 좌측 입구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경사지고 끝단 부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우기 시 우수유입이 우려되며 장애인, 휠체어 등의 출입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RAMP는 필히 설치되어야하고 트랜치는 우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로 예산이 들더라도 개선하기 바란다. 준공 후 금방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와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함께 시공되고 있는 구(舊) 의회 건물은 신축당시 예산부족 등 시공 상의 문제점으로 옥상 누수가 반복되는 곳이다. 이번 공사 시에 방수 공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



다. 조치의견 : 권고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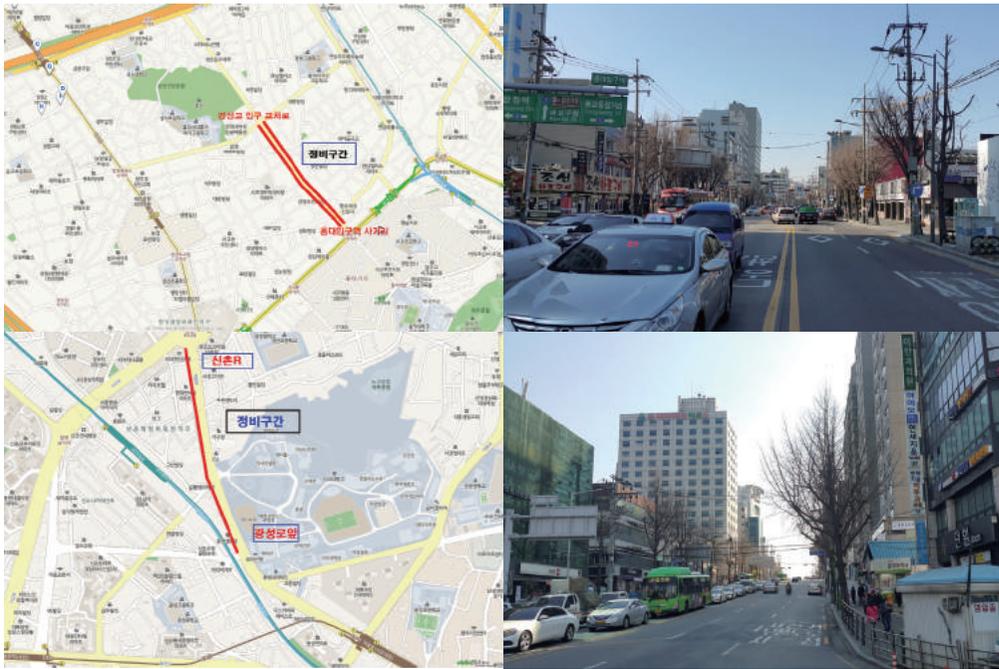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1. 30.
- 사업규모 : 월드컵북로·백범로 2개 구간, 158개 업소 간판개선

- 대상구간

위 치	길 이	업소수	간판수 (개선대상)	건물수
월드컵북로5~69, 월드컵북로6~성미산로78	660m	159	265 (114)	50
백범로4~백범로52	500m	65	83 (44)	23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입찰·계약현황

- 계약금액 : 금395,000,000원
- 계약일 : 2017. 6. 16.
- 발주방식 : 협약

나. 평가결과

주민위원회의 정관은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표준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정관의 사본 등을 챙겨두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업체선정이 ‘주민위원회’와 ‘옥외광고물협회 마포지회’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의 시비 재배정사업이기에 자치구의 위상이 모호한 문제도 있다. 그러므로 책임소재 발생 시 법적인 관점에서 당사자능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위원회의 법적성질에 대해 질의하여 이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책임소재 발생 시 법적 관점에서 당사자능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 주민위원회의 법적성질에 대해 질의하여 이를 명확히 정립하기 바란다.

2017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가. 사업개요

- 공사명 : 2017년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공사위치 : 마포구 관내 일원
- 공사목적 : 관내 노후·불량 도로에 대한 신속한 유지 보수
- 공사금액 : 금1,762,842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7. 12. 31.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관내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한 구간 및 노후·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이사항으로는 3회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점이다. 타부서의 요청 건들이 포함되다보니 매년 설계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변화 상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간단가 계약은 그 특성상 철저한 집행·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위별 유지보수 공사의 계약 및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시공 상태 및 준공, 사후관리와 하자보수 공사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포장도로가 파손된 경우, 무조건 구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해줄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복구비용을 부담 시키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다. 조치의견 : 없음

2017년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25. ~ 2017. 12. 31.
- 사업규모 : 보안등 9,761등 개량 및 유지보수
- 위 치 : 마포구 관내
- 사업비 : 금313,532,000원

나. 평가결과

- 1) 보안등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보안등 설치 장소 및 시기, 제품명, 유지보수 이력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이를 통해 개량 및 유지보수가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유지보수 대상을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 2) 위와 같은 노력을 미흡하게 하는 경우 중간에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 물량 변경으로 설계 변경이 발생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계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다. 평가결과 : 의견표명

보안등 관리 대장을 비치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이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도로정비공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3. 14. ~ 9. 13.
- 사업규모 : 콘크리트블록 포장 60.74@, 측구 및 경계석 정비
- 위 치 : 어울마당로 107 ~ 155-1



- 사업비 : 금790,000천원
- 계약금액 : 금432,038,200원(도급비)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에 따라 시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 조치의견 : 없음

2017년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규모

홈페이지	서버 및 부대장비	솔루션	부서 웹서비스
69개	7식	9식	3식

- 사업 추진 내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 보건소, 마포관광 홈페이지



- 수요자 요구에 적극 대응위한 전문인력 상주 : 웹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각 1명
- 웹서비스 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서버주요부품 무상교체, SW패치
- 사업비 : 금220,000천원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웹서비스 정책 및 사용자 요구 등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신속한 장애 복구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와의 통합유지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이다. 주계약서에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협약서 '용역의 범위' 중 상세내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별첨]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첨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서에 협약기간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협약서의 내용 중 '용역의 범위'와 '협약기간'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 하기 바란다.

2017년 IT역량강화 구민 눈높이 정보화교육 운영 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규모
 - 집합교육 : 연간 270강좌, 7,300명 교육
 - 방문교육 : 연간 26강좌
- 교육대상 : 마포구민
- 교육과정 : 스마트폰(멀티미디어, 이미지편집, 인터넷)활용, DIAT 자격증 및 워드프로세스자격증, 코딩, OA과정 등 31개 과정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 : 금252,000,000원

나. 평가결과

- 1)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대상 선정 시, 이용 구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정·운영 한다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또한 각 프로그램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이용 구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점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교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 자격증 교육의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후 보수 교육과 함께 자격증 취득 실적을 관리해 보는 방안도 강구해보기 바란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 및 어르신과 중장년층의 취·창업과 연계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대상 선정부터 프로그램 운영 이후의 실적까지 모두 이용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2017년 사이버 평생학습관-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 사업목적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
- 사업내용 :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콘텐츠 서비스 제공
- 사업비 : 금52,200,000원
- 홈페이지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이버스쿨 사업은 수시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스쿨에 제공되는 정보는 제때에 Update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시의성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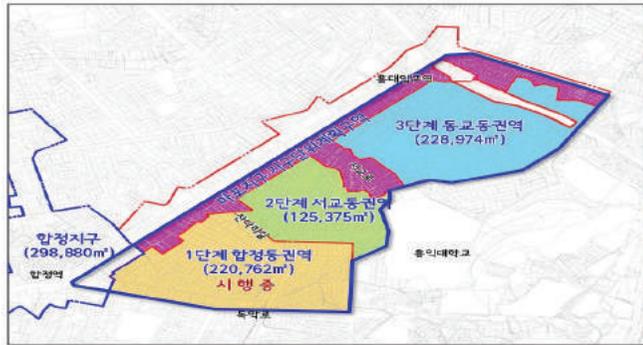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공공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학습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바란다. 또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볼 것 의견 표명한다.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 사업규모 : 711,768㎡
- 용역내용 : 지구단위계획, 교통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 최대개발규모, 점포전면길이 및 대규모 판매시설 제한을 통한 작은 가게 활성화
 - 지정·권장용도 도입 및 가맹시설(프랜차이즈) 입지규제를 통한 특화용도 유도
 - 주차장 설치 완화 및 무상임대공간을 활용한 특화용도 유치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위 치 : 홍대 앞 일원(서교·동교·합정·상수동 일부)



나. 평가결과

- 1) 당초 예정했던 시예산이 계획보다 적게 배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 2) 특히, 이 사업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사업이니 구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사업인 만큼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망원1배수문 외 13개소 정밀점검 용역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 12. ~ 2017. 8. 9.
- 사업비 : 금105,580,000원
- 위 치 : 망원동 450-3 외 13개소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정확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 관리체계 개발을 위한 것이다. 특이사항으로는 난지배수문 현장조사 등에 따라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준공기한을 2017.10.31.에서 2017.11.30.로 연기한 점이 있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계약 시 제출한 기술자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지 확인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심사평가 심사표에 연필로 기재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다음 심사 시에는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다. 조치의견 : 의견표명

계약 시 제출한 기술자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지 확인 및 감독하기 바라며, 적격심사평가 심사표에 연필로 기재한 부분 등이 다음 심사 시에는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방법용 CCTV 관제 용역

가.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17. 2.~2017. 12.
- 사업내용 : 방법용 CCTV 관제센터 내 CCTV 영상정보 24시간 관제
- 근무장소 : 서울시 마포구청 지하1층, 통합관제실
- 근무인원 : 6명(3조 2교대 24시간 근무)
- 사업내용
 - 마포구 통합관제실 내 방법용 CCTV 모니터 상시 관제
 - 범죄 등 각종 긴급사항 발생시 경찰관에게 신속보고 등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제한경쟁)
- 계약금액 : 금175,593,560원

나. 평가결과

방법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소 선정 등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파악된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CCTV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 조치결과 : 없음

2017년 마포구 방법(다목적) CCTV 구매설치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5. ~ 2017. 9.
- 사업내용
 - 방법(다목적) CCTV 60개소 신규설치

위치 계	공덕	아현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	서강	서교	합정	망원 1동	망원 2동	연남	성산 1동	성산 2동	상암
60	6	4	5	4	5	3	4	3	4	3	3	3	3	3	3	4

- 영상저장 용량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360TB 증설
- CCTV 음성안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1식 구매
- CCTV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 PC 2대 구매
- 사업비 : 금600,000,000원
- 발주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평가결과

- 1) 방법용 CCTV 설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등 장소 선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부서에서 CCTV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2) CCTV 설치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방법, 청소,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용 등을 각 부서별로 설치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정지점에 CCTV 설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CCTV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또한 유지·보수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조치결과 : 의견표명

CCTV 설치계획 수립 시 방법, 청소,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용 등을 통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정지점에 설치된 하나의 CCTV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마포중앙도서관 내 만화창작실, 애니메이션실 물품 구매

가.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태블릿컴퓨터 1,000대
- 설치장소 : 마포중앙도서관 5층 만화창작실 및 애니메이션실
- 구매방법 : 일반경쟁입찰(물품적격심사낙찰제)
- 구매금액 : 금99,700,000원

나. 평가결과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조성한 마포중앙도서관 내 만화창작실 및 애니메이션실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물품구매 진행 과정에서 마포중앙도서관의 마감공사 지연에 따라 물품의 납품기한을 2017.9.30.에서 2017.10.20.로 변경한 일이 있었지만, 마포중앙도서관 개관 기념식에 참석하여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 조치결과 : 없음

04 기타 구정 활동 사례

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콘퍼런스” 참석

- 1) 일 시 : 2017. 5. 18. (목) 13:30 ~ 18:00
- 2) 장 소 : 평창 알펜시아
- 3) 주 제 : 국내 옴부즈만 운영사례 발표 및 옴부즈만 제도 발전 방향 토론

나. 제2회 공직자 안보교육 및 법령 기본교육

- 1) 일 시 : 2017. 10. 27.(금) 16:00 ~ 18:00
- 2) 주 제 : 직무에 기본이 되는 법령의 중요성 인식개선 등
- 3) 강 사 : 이수복 옴부즈만

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도 고충민원 및 옴부즈만 전문교육”

- 1) 일 시 : 2017. 11. 30.(목) 13:00 ~ 14:00
- 2) 주 제 : 옴부즈만 민원 사례 교육 등
- 3) 강 사 : 이수복 옴부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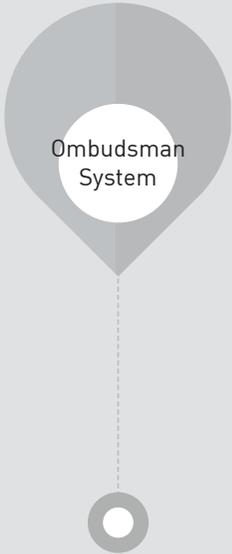
라. 우리구 주관 간담회 개최

- 1) 일 시 : 2017. 12. 13. (수) 12:30
- 2) 장 소 : 마포구 관내 음식점
- 3) 참석 대상 : 총 13명
 - 가) 마포구 ombudsman(3명), 감사담당관, 민원소통팀장
 - 나) 서대문구 ombudsman 및 담당자(5명), 은평구 ombudsman 및 담당자(3명)
- 4) 회의내용 : 지방 ombudsman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논의 등



마.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 1) 일 시 : 2017. 12. 22. (금)
- 2) 참석결과 :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조성추진 반대민원 현장 방문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함



Ombudsman
System

IV. 참고 자료

-
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2. 정례회의 주요 추진일지
 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4.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IV. 참고 자료

01 주요 언론 보도 내역

전국매일신문 2017. 3. 13.

전국매일신문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009면 종합 11.9 x 11.2cm

김순도 마포 옴부즈만, 권익위원장 표창 수상

옴부즈만 조기정착 기여 등 공로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는 김순도 옴부즈만이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 옴부즈만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사진)했다.

건축사 김순도 씨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등 옴부즈만 조기정착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그는 “이번 수상은 마포구 옴부즈만 위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명감을 갖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건축, 주택, 지역경제, 교통, 위생 등의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결정 여부



와 주관 옴부즈만을 선정하고,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심의·의결하거나 의견표명 또는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때 마포구 옴부즈만이 소통창구가 돼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열린 행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産經日報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008면 서울 26.8 x 19.1cm

마포구, 이수복 옴부즈만 공익감사단 선정

자신의 시각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 정착할 것

국민의 역할을 풀어주기 위해 활동 중인 마포구의 이수복 옴부즈만이 서울시 공익감사단의 발족 10대 분야 전문가로 선정됐다. 서울시 공익감사단으로 선정되면 자신의 시각을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매년 증가 추세인 민원피해 및 보조금 사기에 대한 감사들 간소·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공익감사단'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익 감사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지난 3월 법률·회계(28명), 안전(34명), 시정분야(66명) 등 3개 분야 총 117명을 신규 모집한 바 있다.

이수복 옴부즈만은 "공익이 정책과 법을 현안성을 살펴 주는 시찰자 감사 인력이 되지 못했던 시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시 공무원과 협업해 감사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에서 선정된 공익감사단은 앞

으로 3년 동안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심시되는 감사에 대해 참여해 각종 보조금·민원위탁사업 모니터링 및 안전 분야 예방성리 협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중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교육 감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마포구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퇴직한 이수복 옴부즈만은 "2010년 서울시 협회 단위 10년 중 법률·회계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활약기도 했다.

현재 마포구 옴부즈만은 건축, 주택, 지역경제, 교통, 위생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고충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질수원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권장 여부와 주관 옴부즈만을 선정하고,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심의·의결하거나 의견표명 또는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8건의 권고회의를 열어 질수원 697건의 민원을 권고했다.

그중 14건은 직접 조사제 구에 사용되었고, 그 외 민원은 상담



마포구 옴부즈만(왼쪽에서부터) 김철기 옴부즈만, 이수복옴부즈만, 김순조옴부즈만(가운데서부터)

및 관계 부서로 전달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구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청탁제외 이월여부, 평가 등을 합리 수행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

배와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시연 검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활동을 하고 있다.

박승철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마포구 옴부즈만이 소용량구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

를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길 바란다"며, "민간 전문가가 활동에 반영되는 공익감사단 활동을 통해 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시각지대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명희 기자 pr88@skbc.com

시민일보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008면

서울 5.5 x 17.5cm

마포구 옴부즈맨 활약 빛났다

접수민원 66건중 14건 해결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의 옴부즈맨이 건축, 주택, 지역경제, 교통,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에는 53회의 정례회의를 열어 접수된 66건의 민원을 검토했다.

그중 14건을 직접 조사해 구에 시정·권고했고, 그 외 민원은 상담 및 관계 부서로 전달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사절차 여부를 주관 옴부즈맨을 선정하고,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심의·의결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구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청렴계약 이행여부, 평가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와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서면 검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이수복 마포구 옴부즈맨이 최근 서울시 공익감사단의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선정됐다.

서울시 공익감사단으로 선정되면 자신의 시각을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아시아경제

2017-05-29

[지역] 이수복 마포구 옴부즈만 컨퍼런스 활약 돋보여

아시아경제 2017. 05. 29 14:48 | 전홍수 기자 | 2017. 05. 29 14:48

서울에 굴적갑사단, 국민참여회 회장 수상 등 구 옴부즈만 활약 두드러져
2017년 행정 불복률 최저치인 1.4% 기록으로 돋보였고, 장내 옴부즈만과 경찰을 공권력고 추방하는 등 새로운 열쇠가 열렸다.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 건평문화재단 국립중앙박물관과 강릉도 사의 김동진영의회의가 공동 주관한 '2017년 행정 불복률 최저치인 1.4% 기록으로 마포구 옴부즈만'이 소개되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17일부터 2일간 열려왔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회장인 이수복 마포구옴부즈만은 16개국 옴부즈만 회의에 참석해, 지역 옴부즈만 300여명이 참석했다.

18일에 개최된 '구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은 김대건 강릉도 구가 발족한 '구 옴부즈만이 발전'을 주제로 열린 것으로, 이어서 이복기 옴부즈만이 전역 옴부즈만을 대표해 토론 피담을 발표했다.



이수복 마포구 옴부즈만이 17일 오후 6시 30분 서울시 건평문화재단 국립중앙박물관과 강릉도 사의 김동진영의회의가 공동 주관한 '2017년 행정 불복률 최저치인 1.4% 기록으로 마포구 옴부즈만'에 소개되었다.

이수복 옴부즈만은 "그동안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우엔 민간인과 행정기관의 직접 접촉이 필요, 상충하는 사례를 봤다" 옴부즈만은 행정 기관과 민생의 사이 간극을 좁히고 소통, 민생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이후 활성화의 무한의 기본 기반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은 민생, 민생, 민생 등 3년째, 민생의 실질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복기 민생, 민생, 민생, 민생 등 3년째, 민생의 실질적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불복률 최저치인 1.4% 기록을 세우며, 민생의 실질적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건평문화재단 주최로 서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울전역의 민생 보너스를 위해, 서울 전역에 대한 관심, 민생, 민생, 민생, 민생 등 3년째, 민생의 실질적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민생, 민생, 민생, 민생 등 3년째, 민생의 실질적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이수복 옴부즈만은 "국립중앙박물관은 민생, 민생, 민생, 민생 등 3년째, 민생의 실질적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아시아일보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005면 사회 11.0 x 13.9cm

마포구 옴부즈만 활약 단연 돋보여

아시아 국가 옴부즈만과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무엇이 다를까? 아시아 각국의 옴부즈만과 국내 옴부즈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지난 1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사회 갈등조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7년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마포구 이수복 옴부즈만이 토론패널로 활약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17일부터 3일간 펼쳐졌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회원기관, 미국·호주·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초청연사와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18일에 개최된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수가 발제한 '국내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열렸고, 이수복 마포구 옴부즈만이 전국 지방 옴부즈만을 대표해 토론 패널로 활동했다.

2015년 1월 출범한 마포구 옴부즈만은 변호사, 건축사, 前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건축, 주택, 지역경제, 교통, 위생 등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다.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는 이수복 위원은 지난 4월, 서울시 공익감사단의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매년 증가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시는 작년 8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을 출범했다. 공익감사단으로 선임된 이수복 위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함께 참여해 보조금·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과 안전 분야 이행 실태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김순도 옴부즈만은 적극적인 고충민원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용수 기자

産經日報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009면 서울 10.7 x 11.5cm

마포구 이수복 옴부즈만

국제 컨퍼런스에 토론패널 참가

지난 1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사회 갈등조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7년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마포구 이수복 옴부즈만이 토론패널로 활약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3일간 펼쳐졌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회원기관, 미국·호주·오스트리아 등 5개국 초청연사와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에 개최된 '국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김대

건 강원대 교수가 발제한 '국내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열렸고, 이수복 마포구 옴부즈만이 전국 지방옴부즈만을 대표해 토론 패널로 활동했다.

이수복 옴부즈만은 "그 동안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이 동일민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갈등하는 사례를 봤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소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존재"라며, "앞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주민의 기본 권리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전성희기자jsh88@skiboo.com

02 정례회의 주요 추진일지

제2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1.18.)

■ 현안문제 토의

- 신년도 옴부즈만 활동 방안 협의
- 주간민원 접수사항 토론
 - 마포 아트센터 유아 체능단(유치원) 폐원 반대 민원
 - ○○ 재건축 공사로 인한 주변 주택의 피해 발생 대책 강구 민원
 - ○○동 ○○빌라 거주민의 고물 등 쓰레기 방치 민원
 - ○○연립 개발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광고 등 불법행위 제재 요망 민원

제4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2.8.)

■ ○○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 피해 민원 현장 조사

- 참석자 : 민원인, ○○건설사장, 현장소장, ○○이앤씨 담당자신년도 옴부즈만 활동 방안 협의
 - 민원인 의견 : 건물이 기울어졌었기 때문에 현재 보수공사를 했지만 안전에 대한 의심이 들어 처음부터 건설사 측에 건물을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이앤씨 의견 : 400-13은 PSC, CFT 공법 등을 이용하여 지하에 말뚝을 박아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됨.
 - ○○건설 의견 : 400-11 측에서 민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400-13에는 더 이상 보상할 의사가 없고 다른 가구들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향이 있음.
- 옴부즈만 의견
 - 보수공사는 안전하게 완료되었음.
 - 건설사 측에서 건물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니 적절한 합의금액을 생각해볼 것.
 - 보상금 산정 시 건물 구조적인 문제 발생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볼 것.

제8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3.2.)

■ ○○동 ○○-37 건축물대장 복원 요청 민원 검토

○ 민원 내용

- 구청에서 서울시 방침내용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았음.
- 정비사업추진 및 보상에 대한 기약이 없어 경제적 손실이 큼.
- 말소된 건축물대장의 복구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비준치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 기준' 및 「건축법 시행령」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규정들을 넓게 해석, 적용하여 가급적 민원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

○ 도시계획과 의견

- 서울시 방침은 1978년부터 시작된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장기미시행구역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
- 우리 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구역 건축행위기준에 대해 서울시 방침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음.
- 동 번지는 정비계획에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지구가 있을 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조성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임.
-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는 동 번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임.

○ 옴부즈만 의견

- 구청에서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하였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향이 있어 옴부즈만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을 구제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 중임.

제1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4.12.)

■ ○○동 ○○○-29 재산세 과세대장 정정 요청 민원 검토

- 관련 법규 검토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적용 문제 : 주택면적이 100분의 50이상 되지 않으므로 제1호를 적용해서 사용 용도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옴부즈만 의견
 - 구 재산세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전입세대 관련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대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제19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5.11.)

■ ○○동 위반 건축물 철거 요청 민원 검토

- 민원요지
 - ○○동 200-10 위반건축물(4,5층)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가 2016.8.10. 작성한 각서 내용대로 철거할 것을 요청.
- 옴부즈만 의견
 - 민사소송 방안 안내 : 이미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건축물 철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법률구조공단 등 민원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내함.

제23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6.21.)

■ ○○동 경로당 이전 요청 민원 검토

- 경로당 신축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
 - 건설관리과 :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 면적이 매우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과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또한 가능하다고 해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도시계획과 : 도시 관리 계획 상 저촉사항 없으므로 별도 의견 없음.
 - 건축과 : ○○동 ○○○-16번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두 건물 사이에 1.5m의 간격이 있어야함. 현 면적에 비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것임.
 - 토목과 : 도로의 선형 유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가각부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 부지의 건축 계획 수정 및 용도폐지의 경계 수정이 필요함.

○ 옴부즈만 의견

- 현재 ○○동 경로당이 마을 진입 골목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낡은 경로당 건물이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초래하고 있음.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지나친 이전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있지만 이를 잘 설득 및 협의하여, 인근 건물 매수 등의 방법으로 경로당 이전이 추진되기 바람.

제24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6.28.)

■ 상자 텃밭 보급사업 검토

○ 옴부즈만 의견

-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므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구민들과 단체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음.
- 다만 수의 계약의 경우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25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7.5.)

■ ○○ 시장 고객선 관련 민원 검토

○ 민원요지

- ○○ 시장 총무가 가게 앞에 고객선을 긋고 도로를 점거하고 있으며, 영업장 외 영업을 하여 비상시 소방차 출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를 시정할 것.

○ 현장조사 결과

- 양쪽에서 고객선(자율 통제선)을 확장해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함.
- 비상사태 발생 시 소방차량 출입에 문제가 있어 보임.
- 시장의 일반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판단됨.

○ 옴부즈만 의견

-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결과에 따라 고객선을 다시 그릴 것.

제32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8.23.)

■ 2017년 마포구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용역 검토

- 옴부즈만 의견
 - 주계약서에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협약서에 '용역의 범위'를 「별첨」 등의 방법으로 첨부할 필요가 있음.
 - 협약서에 '협약기간'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할 것.

제33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8.30.)

■ ○○동 ○○○-84번지 옹벽 붕괴 피해 민원 검토

- 참석자 : 민원인 및 피민원인, 건축과 관계 공무원
 - 민원인 의견 : 민원인 윗집의 옹벽이 붕괴되어 토사 유출되었음. 이로 인해 민원인집의 세입자가 긴급피난을 나가고 민원인의 가옥이 파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함.
- 협의 결과
 - 축대 재축조 비용부담은 축대 공유부분에 대한 분쟁방지 등을 이유로 축대 소유권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함.
 - 축대붕괴로 발생한 실외기, 물받이, 창문 파손 등은 윗집에서 보상해 주기로 함.
 - 민원인은 세입자 이주비 등 추가 발생 손실비용에 대해 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함.

제37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10.12.)

■ 지게차 주택가 주차 금지 요청 민원 검토

- 민원 신청 경위
 - 주거지역에 건설기계차량(지게차)이 주차되어 인근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약 2년 동안 해당 건물 소유주인 LH공사 측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해

결되는 부분이 없음.

-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전주차 가능한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당주차장은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며, 만약 건설기계차량 주차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공석이 없어 대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 위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건설기계차량의 이전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해결방안이 없어 옴부즈만에 민원 해결을 요청함.

○참석자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주무관

- 부서 의견 : 해당 건설기계차량을 조회한 결과 영등포구 등록차량임.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구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옴부즈만 의견

- 먼저 소관부서에서 차주에게 민원내용 전달 및 시정을 요구할 것.
- 이후에도 시정 되지 않으면 현장에 이전 독촉 계고문을 부착하고 관할 구청에 민원을 이첩할 것.

제39차 정례회의 추진일지(2017.10.25.)

■ ○○동 3○○-11,12 신축공사 피해발생 관련 민원 검토

○참석자 : 민원인 ○○○교회 목사님 외 2명, ○○ 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감리자, 건축과 관계 공무원

- 민원인 의견 :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피해부분 복구 요망.
- 면담결과 : 정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함.

○옴부즈만 의견

- 현재까지 진행된 합의사항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교회 및 시공사 양측에 보내주고 사전 검토할 것.
- 다음 정례회의시 양측의 감정 결과에 따라 보수하기로 하는 최종 합의문(안)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함.

03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등)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할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4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평가
-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제5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마포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 2. 마포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3.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마포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6조(옴부즈만 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각각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합의제로 운영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2.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계되는 사항
 - 3. 본인이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이하 “신청인 대표”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

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청장 소속하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마포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반려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반려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대표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5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21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평가(이하 “감시·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시·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장에게 감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계획의 수립)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운영지원 등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04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ombudsman) ① 대표ombudsman은 ombudsman을 대표하고, ombudsman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ombudsman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ombudsman이 미리 지정한 ombudsman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ombudsman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완료 및 기한 연장 통지) ombudsman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거나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신청인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서약) ombudsman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제시) ombudsman이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ombudsman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
4. 그 밖에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제9조(청렴계약 감시·평가 자료제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감시·평가 대상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제10조(수당지급) 조례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11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17년
마포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발행일 2018년 3월

발행인 마포구 옴부즈만

주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

전화 02-3153-8184

홈페이지 www.mapo.go.kr
